

**환경부
보도자료**

2004년 1월 13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 ☐ 2005. 1. 배포
- ☐ 사진 없음
- ☐ 총 14쪽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최병수 과 장 채수만 사무관	전 화 (E-mail)	2110-6845 chaesoo@me.go.kr
----------------	--------------------	-----------------	-------------------------------

3.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 낙동강본류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류의 새로운 유해물질 발견시
관련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

- ☐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과 같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 될 경우 관련기관에서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 이 규정은 정수장, 하천, 호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연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이내일지라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이에 대한 배출원 추적조사 및 미량유해물질 저감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물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 효율적 조치를 위해 발견단계, 대책단계, 대응단계, 장기대책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선 환경부는 유해물질관리대책 수립, 배출원추적, 처리기술개발,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유해물질관리 관리를 총괄하고,
 - 국립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특성과약, 실험·분석방법 검증 및 관련기관에 실험·분석방법 전수교육,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등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은 하천, 호소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등 해당지역에서의 유해물질관리를 총괄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배출원 추적조사, 배출원에서의 저감대책 추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체결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며,
 - 정수장은 처리공정을 최적화 하고, 정수원수 및 수돗물에 대한 유해물질 실험·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 또한, 환경부는 환경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견초기 단계부터 배출원 파악, 처리기술 등 유해물질 관리과정 및 유해물질의 검출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유해물질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동 위원회를 통해 대책추진사항과 사고대응요령 등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 앞으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각 기관별로 이 규정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

어저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로, 이번 제정규정은 낙동강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부산, 대구, 경남 등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는 물론 중앙의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자문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붙임 :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붙임〉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2004.12.31. 환경부훈령 제5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조사연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기준(이하 “안전기준” 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 또는 안전기준 이내일지라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배출원 추적조사 및 미량유해물질 저감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연구”라 함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연구기관장”이라 한다)이 수질개선 또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물질로서 사람 및 동·식물에 발암성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을 말한다.
3. “유해물질관리”라 함은 유해물질의 발견, 배출원 추적조사, 저감대책 수립 등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배출자”라 함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법인 및 사업주를 말한다.

제3조(유해물질관리의 구분) 유해물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발견단계 : 각종 연구사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또는 안전기준 이내 일지라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정도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단계를 말한다.
2. 대책단계 : 발견된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대책 회의 개최, 정수장에서의 저감방안 강구 또는 배출원에서의 저감대책이 필요할 경우 배출원을 파악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대응단계 : 정수장에서 정수공정을 보완하여 정수된 수돗물이 안전기준 이하로 되게 하거나, 유해물질을 배출원에서 원료대체,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공정 변경, 위탁처리 등으로 저감하여 방류하천에서 하류로 가장 가까운 정수장의 정수원수에서 안전기준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장기대책단계 : 유해물질에 대한 처리기술 개발 및 확보,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추진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 2 장 유해물질 관리

제4조(유해물질 발견단계) ①연구기관장은 연구사업 수행중 또는 수행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반복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 등으로 지속적으로 검출 및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음을 검증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유해물질 발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수장 및

배출원에서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된 자료만으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1. 유해물질의 특성 및 유통량에 관한 자료
2. 발견 지점 및 검출 빈도
3. 각국 및 연구사업에 사용한 실험·분석방법의 비교검토 자료
4. 배출원에 대한 자료
5. 정수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저감기술 관련 자료
6. 배출원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대책
7. 취수중단, 수돗물을 끓여 먹는 등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8. 각국 먹는물수질기준 적용여부, WHO 기준 또는 권고기준 등 관리실태
9. 기타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유해물질 대책단계) ①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발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유해물질관리대책(이하 “유해물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해물질대책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해물질대책 추진 상황실 설치·운영
2. 대책반 구성 및 관련기관별 업무분장
3. 보고체계 구축
4. 정수장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5. 배출원 추적조사 계획
6. 배출원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7. 유해물질 사후관리 및 장기대책
8.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9. 유해물질 실험·분석방법 검증에 관한 사항
10. 대책 추진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유해물질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별표 1의 기관별 업무를 부여 한다.

제6조(유해물질 대응단계) ①환경부장관은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기관별 유해물질대책의 추진을 총괄하여 추진사항을 점검, 수돗물에서 먹는물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정수장에서 동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배출원을 파악하여 배출원에서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원 파악 및 배출원에서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배출원을 파악하도록 하고, 저감대책을 추진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감시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 시·도보건환경연구원(소)장,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물환경연구소장에게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방법을 전수하고, 정수장 및 배출원에서의 저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은 연구기관장으로부터 유해물질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방법을 전수받아 당해 정수장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처리효율을 산정하여 최적의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⑤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추진사항을 파악하여야 하며, 하천 또는 호소에서 유해물질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물환경연구소(실험·분석방법 전수 전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원 파악 및 저감대책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배출원 파악 및 저감대책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배출원파악은 유해물질 유통량을 조사하여 다량 사용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하천 또는 지점별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농도가 높은 지점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배출자를 추적조사하고, 생산공정중 부산물로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도 병행하여 파악한다.

③배출자가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배출원과 가장 가까운 하류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 또는 호소에서의 유해물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지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검사를 하여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장에게 이를 전파하여야 하며,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자 각각의 생산규모, 배출농도 등을 근거로 유해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배출자,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3자간의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출자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소)에 실험·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원인이 배출자에게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자에게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대책단계)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물질의 실험·분석 방법, 정수기술 개발, 전국적인 배출량, 폐수처리기술 개발, 처리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먹는물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유해물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관리 과정

에서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 학계, 환경단체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유해물질자문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 10인 및 발견된 유해물질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발견, 대응 및 국민에게 알려야 할 시기
2. 정수장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3. 배출원 추적에 관한 사항
4. 배출원에서의 생산공정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의 유해물질 저감방안
5.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사항
6. 자발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유해물질 사후관리 및 장기대책에 관한 사항
8.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9. 유해물질 실험·분석방법 검증에 관한 사항
10.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저감방안
11. 기타 유해물질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 유해물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유역(지역)환경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정수사업소장)은 필요할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유해물질관리 대책본부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 ①환경부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

에는 종합상황실을 두고 유역(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지역대책본부를 둔다.

②지역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지역에서의 오염도검사, 자발적 협약체결 등 관계기관별 대책추진 사항을 총괄한다.

③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2와 같다.

제 5 장 유해물질관리추진실적 보고

제12조(추진실적보고)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부여받은 관련기관은 동 업무를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돗물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없을 때 까지 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물질관리 기관별 업무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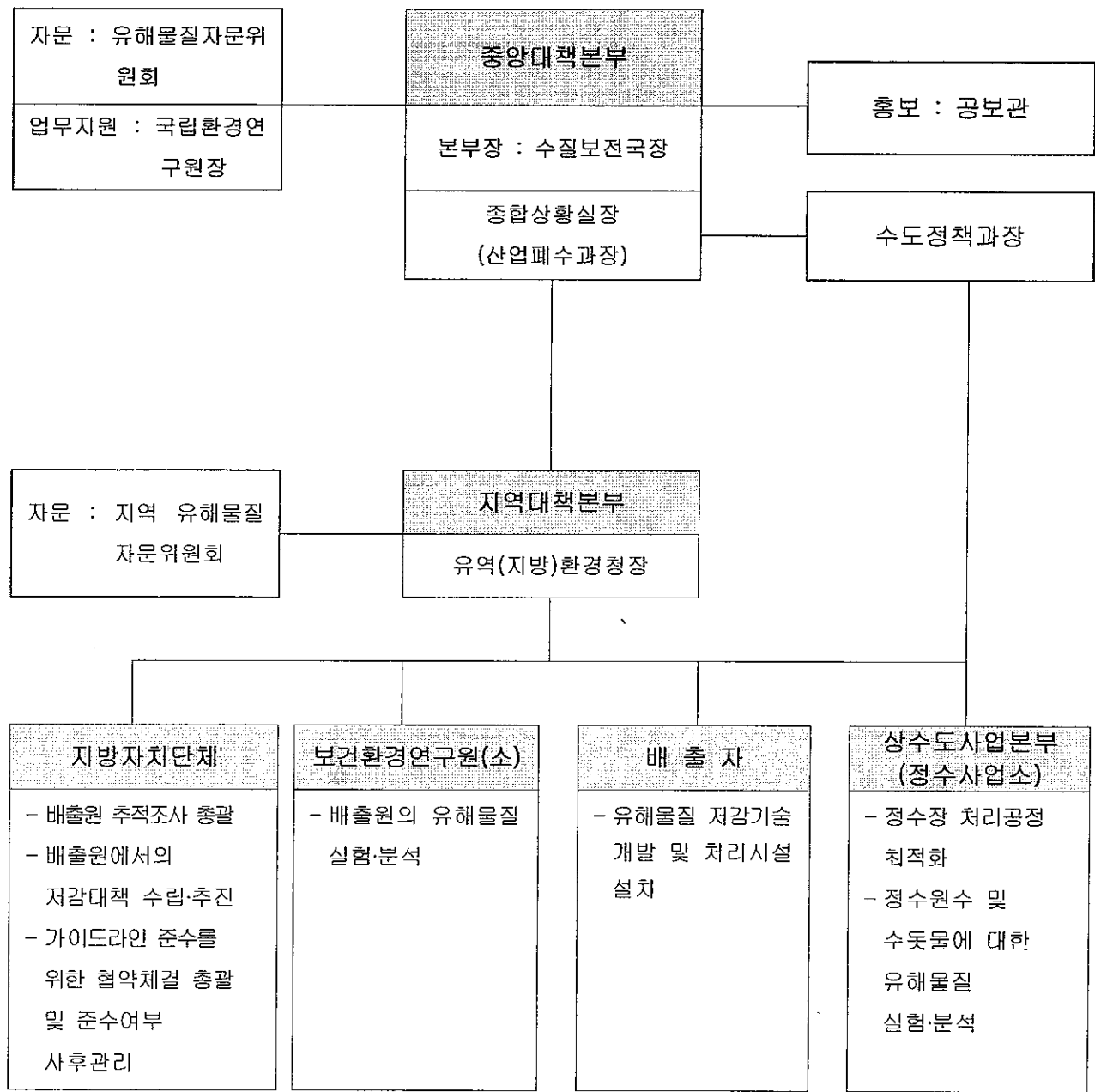
기 관	부서	추진 업무	보고(통보)	
			기관	주기
환경부	산업폐수과	- 유해물질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총괄 - 중앙대책반 구성·운영 - 유해물질 배출원 추적 및 관리 총괄 - 배출원에서의 처리기술개발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 총괄	수도정책과	사유발생시
	수도정책과	- 정수장에 상황 전파 - 정수장에서의 처리기술개발 및 먹는 물수질기준 제정 검토 총괄	산업폐수과	사유발생시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와	- 유해물질 특성 파악 - 정수장에서의 처리기술개발 및 먹는물수질기준 제정 연구검토 - 실험·분석방법 검증 및 정수장, 보건환경연구원(소), 물환경연구소, 배출자에게 실험·분석방법 전수 교육	환경부 (산업폐수과, 수도정책과)	사유발생시
	수질공학과	- 유해물질 배출량 및 배출원 파악 - 배출원에서의 처리기술개발 및 배출허용기준 제정 연구 검토	환경부 (산업폐수과)	사유발생시
	물환경연구소	- 하천·호소에서의 유해물질 실험·분석(추적조사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종료즉시

기 관	부서	추진업무	보고(통보)	
			기관	주기
유역(지방) 환경청	상수원관리과 (관리과)	- 지역대책반 구성·운영 및 총괄 - 가이드라인 설정(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준수여부 사후관리 -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체결(지방자치단체, 배출자 공동) - 가이드라인 초과시 상황전파, 대책회의, 대책수립 및 추진 - 하천·호소에서 유해물질 시료 채취 및 실험·분석의뢰	환경부 (산업폐수과, 수도정책과,)	사유발생시
	환경감시대	- 배출원 추적조사(지방자치단체 합동)		
지방자치단체	시·도	- 배출원 추적조사(환경감시대 합동) 총괄 - 배출원에서의 저감대책 수립·추진 -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체결(유역(지방)환경청, 배출자 공동) 및 준수여부 사후관리	환경부 (산업폐수과), 유역(지방) 환경청	사유발생시
	보건환경연구원(소)	- 배출원의 유해물질 실험·분석	지방자치단체	종료즉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장)	- 정수장 처리공정 최적화 - 정수원수 및 수돗물에 대한 유해물질 실험·분석	환경부 (산업폐수과, 수도정책과), 유역(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종료즉시

※ 기관별 매월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산업폐수과)로 보고

〈별표 2〉

대책본부 구성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관리 대책 추진실적 보고(통보)

(년 월 일)

☐ 수 신 : 환경부 장관(또는 지시 기관의 장)

☐ 발 신 :

보 고 기관명		보고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	
------------	--	-----	----------	--	----	--	----	--

1. 개요

- 지시문서 접수일 :
- 지시기관명 :

2. 추진 업무명

- ※ 자체 추진계획서 '별표 1'에 근거하여 작성

3. 추진 내용

- ※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을 일자별 등으로 작성

5. 향후 조치계획

-

6. 기타

-

붙임 :